

의안번호	2217417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3.13.
추 계 번호	26B13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8,300만원, 2031년 10억 3,9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9억 8,800만원(연평균 5억 9,800만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안 제64조)	183	377	585	805	1,039	2,988	598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재혼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의 수 및 연평균 수급액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추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재혼 건수, 해당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재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음(제1항제2호 삭제) 2. <u>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의무규정
2	안 제64조의2(재혼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특별) 신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4조(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 지 등)	○	• 공식추계
2	안 제64조의2(재혼 에 따른 유족보상연 금의 지급 특례) 신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²⁾,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6년 1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2.9	3.3	3.2	3.3	3.3	3.3	3.3	3.3

- 2)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는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수급 자격을 상실함

□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재혼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대상자의 혼인기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이로 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또한, 개정안은 재혼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설계에 따라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현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 동안 지급대상자 수에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지급대상자 수) 본 추계서의 지급대상자 수는 최근 5년간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의 수의 평균값(9명)을 준용하여 산출

[표 2]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의 수: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족보상연금	6	13	7	7	10

주: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일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계기간 동안 매년 9명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고 연도별 지급대상자 수가 누적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개정안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수(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유족보상연금	9	18	27	36	45

주: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일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지급단가) 2024년 기준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직전 연도의 유족보상연금 연평균 지급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당해연도 수급액은 재혼 시점에 따라 수급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한 개월 수가 상이하므로 직전연도 수급액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지급 시점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

[표 4]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의 1인당 연평균 유족보상연금 수급액: 2020~2024년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족보상연금	11,253	18,917	18,077	18,605	17,940

주: 1. 재혼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한 해의 직전 연도에 지급된 연금액의 평균액

2. 2020년도에 재혼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는 모두 반액 연금제도를 선택(일시금으로 50%를 먼저 받음)하여 평균액이 적게 산출됨

자료: 고용노동부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대상자 수(A, 명)	9	18	27	36	45
연간 지급액(B)	20	21	22	22	23
추가재정소요(C=A×B)	183	377	585	805	1,039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재혼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의 수 및 연평균 수급액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추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재혼 건수, 해당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재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재혼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수급자의 수 및 연평균 수급액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추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재혼 건수, 해당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재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산출한 재정소요이므로, 관련 제도가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